

근로계약서의 퇴직 2개월 전 사전 통지 및 위반 시 위약금 지불조항 - 무효: 울산지방법

원 2020. 11. 25.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

(1) 근로계약서 조항 - 퇴직 2개월전 사전 통지한다 + 2월 사전 통지 위반 시 약정한

위약금지급의무

(2) 종업원 사전 통지 위반하여 경쟁회사 이직 - 사용자의 위약금 청구

2. 판결요지

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,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다. 근로계약서상 '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'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.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.

첨부: 울산지방법원 2020. 11. 25. 선고 2020가소205038 판결

경업금지, 전직금지, 영업금지, 영업비밀, 형사고소, 민사소송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